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보조금
1	사병의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성광회대 인권평화센터	12,650
2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발간	인권과평화를 위한국제민주연대	7,950
3	군인의 전화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8,400
4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4,500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	전보네트워크센터	11,620
6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수첩 및 CD발간 보급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13,650
7	'빅브로더 보고서'발간 사업	함께하는시민행동	8,325
8	환자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건강연대	8,575
9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지역 인권단체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 워크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9,600
10	방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용 다큐제작	양심에따른방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13,000
11	교칙을 바꾸자. 청소년 인권을 찾자	(사)홍사단	5,530
12	여성 장애인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연대체 구성과 실천프로그램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0,100
13	중고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9,270
14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및 인권교실	의산YMCA	4,610
15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영/일어 번역 및 자막 편집 사업	두 래 방	11,613
16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 흥보 및 교육사업	한국DPI	9,066
1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무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활동가 양성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6,370
18	제1회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노근리사건대책위	6,797
19	2003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8,780
20	아시아평화연대 활동가 국제회의(JPW) 참석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
21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환경운동연합	10,000
22	여성의 빙くん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9,030
23	희귀난치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사업	한국백혈병 환우회	7,744
합계			200,000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인권침해조사·구제 등 핵심업무에의 집중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인권보호 및 향상이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구체적 업무분야는 크게 인권침해조사·구제,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 인권관련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등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취지 그리고 아직도 엄존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침해당사자에게는 참기 어렵고 억울한 문제로서의 개연성이 내재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구제야 말로 절실한 현안과제일 것임.

2003년 기준 진정사건을 살펴 보더라도 접수된 총 3,815건 중 인권침해 사건이 전체의 79.7%(3,041건)로서 차별행위 사건 9.4%(358건), 기타 사건 10.9%(416건)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인권침해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제도적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추진 할 일은 조사역량의 강화,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점임.

한정된 예산과 인력하에서 광범위한 많은 일을 모두 잘 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인권침해문제 등 중요한 현안과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시성 내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많은 사업(예컨대 교육홍보 관련사업중 일부)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조사·구제를 비롯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업무평가시스템의 부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평가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임. 각종 사업을 엄정 평가하여 피드백하고 업무의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업무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음.

정부 각 부처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업무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여기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진단 또는 평가시스템을 마련·시행하여 평가 또는 진단의 결과 각종 사업의 실효성문제, 부서별 인력배치 및 사업별 예산편성의 비중문제 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사건 처리상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408건으로 이 중 처리건수는 76.3%인 5,653건이고, 인용건수²⁾는 171건으로 인용률은 2.3%에 불과함. 또한, 인용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8개월 이상 걸리는 등 진정사건의 지연처리의 문제가 있는 바 그 원인은 조사권한의 한계, 조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보여짐.

또 각하의 건은 77.7%로 이는 취하가 47%에 이르는 점 등에 기인하지만, 9.9%는 1년이 넘었다고 해서 각하한 경우임.

1년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진정의 성격상 억울한 사정의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때,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³⁾를 개정하거나 단서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직권조사의 건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한 것은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처리 방식에 기인하는 바, 인권취약분야에 능동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실효성있게 해결해 나갈 필요도 있음.

2) 고발·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 합의종결의 합계
3)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처리 현황

(2001. 11. 26 ~ 2003. 12. 31)

□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사건 종 결										조사 진행	처리율 (B)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종결	기각	이송	각하		
계	7,408	5,653	12	19	4	103	5	28	945	143	4,394	1,755	76.3
%	-	100.0	0.2	0.3	0.1	1.8	0.1	0.5	16.7	2.5	77.7	-	-
인권침해	5,874	4,502	12	19	4	60	5	23	853	142	3,384	1,372	76.6
차별행위	547	398	-	-	-	38	-	5	66	1	288	149	72.7
기 타	987	753	-	-	-	5	-	-	26	-	722	234	76.3

□ 직권조사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사결정	조사진행	조사종결	비 고
계	4	1	3	
인권침해	2	-	2	2건에 대하여 고발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
차별행위	2	1	1	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조치

□ 진정사건 각하 사유별 내역

(단위 : 건)

사건구분	계	각 하 사 유						
		조사대상 아님	명백히 거짓, 이유없음	조사 원칙 않음, 진정취하	1년이상 경과후 진정	구체절차 진행·종결	법원 판결, 현재 결정에 반한	기 타
계	4,394	828	197	2,067	436	665	181	20
%	100.0	18.8	4.5	47.0	9.9	15.1	4.1	0.5
인권침해	3,384	284	167	1,882	345	535	159	12
차별행위	288	64	2	104	52	59	7	-
기 타	722	480	28	81	39	71	15	8

* 참고자료

1. 2002년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제 목	관련 내용 요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제회의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상당 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또는 참가자와의 결여 등의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참가하였음.	-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자 위를 갖는지 여부, 국제회의 참가에 따르는 실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회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당초 계획대로 참가함으로써 문제점 해소됨.
간단한 법률 검토에 대한 용역화 문제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5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외부 용역화 하였음.	-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03년 이후 법령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를 하지 않음.

2. 2003년도 국외출장 현황

□ 기본사업비 : 53,226천원

○ 외국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관 방문 현황 : 2회 6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국기인권기구	유럽인권재판소 및 스웨덴 음부즈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0.6-11 프랑스 스웨덴	인권정책국장, 차별 조사국장, 최영란	
	유럽인권기구방문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2.11-21 덴마크(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유현유시춘, 김난희 위원, 최영란	주요사업비와 함께 집행
	몽골인권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위원장 초청)	8.26-29 몽골	위원장 유시춘위원회상포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과정 모니터링	11.17-22 제네바	박경서위원 교육협력국장	주요사업비와 함께 집행

□ 주요사업비 : 214,362천원

○ 국제회의 참석 현황 : 21회 55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모니터링	1.11-18 제네바	박경서위원 장영아, 정연길	
	인종차별 교육교체 개발 워크숍	인권위 인권교육 참고	2.18-21, 파리	김철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1차 워크숍	아·태 지역 정부간 회의로서 정부대표, NGOs 참가	2.22-3.1. 아울리아비드	교육협력국장 김선민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3.15-4.19(5주), 제네바	차별조사국장 등 7인	
	장애인협약 특별 위원회(2차)	장애인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참가 및 의견개진	6.20-6.23, 뉴욕	우현위원 최영란, 김정학	
	인종차별철폐위원회(제63차) 및 인권소위원회	인종차별협약 한국정부 이행보고서 심의 및 인권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8.7-14 제네바	박경서위원 김오섭위원 정연길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과정 모니터링	11.17-22	박경서위원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APF	APF 워크숍	장애인 권리 및 장애인 협약관련 워크숍	5.24-6.1, 뉴델리	제네바 한희원국장	
	인권과사법행정 워크숍	인권과 사법행정 국제회의 참가	9.8-12 말레이시아	차정환 서수정	
NGO	ESCR-Net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연대회의 참가	6.6-13. 차양마이	유인덕, 이용근	
	비엔나+10아태회의	비엔나 선언 10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12.13-17 태국	박경서위원	
	인권교육실무자 국제 회의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11.9-14 태국	김철홍	
기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69차)	제69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PLA) 대회 참가	8.2-9. 베를린	심민석	
	미국고용기회평등 위원회	조사관교육 참가	9.20-26 미국	이수연	
	부경주제 한국대사관-영사관	진정사건 현지 방문 조사	10.6-9 중국	정혜음 김원숙	
	실무연수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9.24-10.2 노르웨이, 네덜란드	김대철 등 11명	행자부 예산
	인권대사	인권위의 활동상황 홍보	9.14-20 영국,독일	박경서위원	
	실무연수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10.19-11.2 미국	박성남	행자부 예산
	심포지엄	일본 가구인대학교 초청심포지엄 참가	12.14-16 일본	장강자위원	
	국가인권기구	유럽인권기구방문	12.11-21 [마드리드,노르웨이 이스트로마]	유현,유시준,김만 홍 위원,최영란	
	국가인권기구	유럽아프리카 인권기구방문	12.20-28 [스페인]모로코	우원장 등 5명	

* 실무연수를 제외한 NGO 및 기타 국외출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함.

○ 국가인권기구 교류 현황 : 6회 11명

교류 기관	인원	소 속	교류 분야	일정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사무국	1	정책총괄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03.11.10~11.24
필리핀 인권위원회	2	충무과 인권교육	인사정책/인권교육	'03.11.10~11.24
피지 인권위원회	2	인권침해조사국, 인권교육	인권침해/인권교육	'03.11.19~12.3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2	차별조사국	차별조사 및 구제	'03.11.22~12.5
호주 인권위원회	2	법제개선담당관 인권침해조사국	법령·제도·정책 /인권침해조사	'03.11.29~12.13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2	조사기획담당관 국내협력과	인권침해조사 /국제협력	'03.12.8~12.23

200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200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Ⅳ. 결산 결과

- 4 -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다. 감사원소관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04. 8.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라. 헌법재판소소관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04. 8.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마. 대법원소관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04. 8.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바.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04. 8.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사. 부패방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04. 8.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액	-
정수결정액	5,800만원
수 납 액	4,800만원
미 수 납 액	1,000만원

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82.75%이고, 미수납액비율은 17.25%임.

7. 부폐방지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액	-
정수결정액	1,372만9천원
수 납 액	1,372만9천원
미 수 납 액	-

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100%임.

세 출

세 출

예 산 액	189억1,874만4천 원
전년도이월액	9억8,621만원
예 산 현 액	199억 495만4천 원
지 출 액	170억6,821만4천 원
다음연도이월액	11억5,903만2천 원
불 용 액	16억7,7700만8천 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85.7%이고 다음연도이월액비율이 5.9이며 불용액비율은 8.4%에 해당됨.

예 산 액	159억2,201만5천 원
전년도이월액	12억3,145만원
예 산 현 액	171억5,346만5천 원
지 출 액	158억5,157만원
다음연도이월액	4,020만원
불 용 액	12억6,169만5천 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92.4%이고 다음연도이월액비율이 0.2%이며 불용액비율은 7.4%에 해당됨.

6.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 김 대현)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가. 인권상담 전문성 등 제고에 관한 사항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예산 총 1억 6,909만원중 1억 6,85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인권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사례금)에 1억 5,000만원,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55만원을 지출하였음.

인권상담센터는 인권관련 경험자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에 대하여 전화 및 대면상담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여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되었음.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 업무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조사·구제업무와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진정·상담·안

내 접수건수가 19,416건에 이르는 점과 2002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46.9%의 높은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임.

그러나, 현재 인권상담센터에는 10명의 상담원이 일당 5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개월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이직률이 높은 명예직 자원활동가들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책임성,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축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음.

따라서 상담원의 정규직화 등 인력운영상의 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진 정	상 담	안 내
2002년도	13,217	2,790	2,869	7,558
2003년도	19,416 (46.9% 증)	3,815 (36.7% 증)	5,261 (83.4% 증)	10,340 (36.8% 증)

* ()는 전년대비 증가율

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2003. 12. 31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은 186명(인권위원 포함, 파견직원 제외)으로 이 중 연인원 기준 약 39%인 72명(2회 이상 출장자 12인 포함)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해 2억 6,759만원을 지출하였음.

또한 연간 29차례에 걸친 국외 출장의 총출장일수(팀별 출장일수의 합계)는 286일에 달하고 있음(참고자료 2 : 2003년도 국외출장현황 참조). 이와 같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중 상당수가 해외출장을 가고, 더구나 2회 이상 출장자가 적지 않으며, 출장일수 또한 상당히 많게 집계된 것은 신설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가 계속 급증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므로 잦은 해외출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 및 ESCR-NET 등 각종 NGO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출장은 많은 외화를 들여가며 집행할 만큼 실익이 있거나 추가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외출장현황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출장횟수	출장인원	지출내역
29	72(중복출장 12인)	267,588

다.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사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개 과제의 인권상황실태조사, 15개 인권시민단체의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 · 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수립 · 행정공무원인권교육 체자집필 · 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정신과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으로 총 계약액은 19억 1,863만원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3개 과제에 계약액은 8억 2,916만원이며 이를 외부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과 아울러 현 인권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협장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를 위해 외부용역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둘째, 15개 시민단체의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경우 형식상 예산편성 과목은 연구용역개발비(예산과목 206-01)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모·심사·평가 등을 별도로 행하는 데 따르는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혀야 할 것임.

셋째,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의 계약 또는 협상계약으로 체결되는 현실에서 위원 또는 직원이 과거 근무했거나 관련되었던 시민단체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원칙인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넷째,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그 용역결과에 대하여 발표케 하여 그

과정과 용역결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용역사업중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21건이 사고이월 되었는 바 상당수 사업이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6건이 2003. 12. 16에, 2건은 2003. 12. 19에 사업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이월이 사업내실화 추구로 인한 기간부족에 기인한다고 보다는 계획성 없이 집행된 데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히 계획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계약액
1	국내 거주 외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9,000
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24,517
3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 래 방	27,000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23,887
5	차별관련 법령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5,000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68,700
7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외국어대	20,000
8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9,000
9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23,000
10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 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9,000
11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실태조사	대구가톨릭대	29,000
12	비정규직노동자 건강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39,900
1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40,360
14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73,000
15	주거빈곤계층 사회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50,900
16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경원대학교	32,900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49,000
18	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8,000
19	장애 및 병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체활복지대학	28,000
20	연령, 학벌, 학력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22,000
21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22,000
22	구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9,000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한국공법학회	86,000
계			829,164

2003년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분 야	사 업 명	단 체 명	사업비
성적소수자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9,200
"	2003 여름 성적소수자 인권캠프 및 대학 순회 인권학교	동성애자인권연대	6,434
"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프로그램	끼리끼리	5,675
이동 및 청소년	이동인권향상과 가족기능회복	인천YMCA	10,750
"	이동 은리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0,600
"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	한국청년연합회(KYC)	7,540
"	1318! 너의 이름은?	울산YWCA	6,250
여성	상담활동기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한국여성민우회	1,610
"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	기독교여성상담소	8,025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및 모성보호 사업	이주여성인권센터	11,530
"	아클라(AACLA)인권학교	아시아의 친구들(고양)	9,500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찾이주기	지구촌시랑나눔(성남)	13,875
장애인	장애인인권지지	장애인의권익문화연구소	12,697
"	장애인과 하나되는 어울마당	목포경실련	3,464
"	청소년과 장애인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야간학교 참여자체21(광주)	참여자체21(광주)	7,850
합 계			125,000

기타 용역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수주자	계약액	비고
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	성공회대(한홍구)	59,860	
행정공무원인권교육 책자집필	이성훈외 8인	18,806	
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서울대(문용린)	39,300	
정신과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실태조사	중앙대	71,100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아이티스카스튜디오 외 3개사	312,400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시스월 외 1개사	463,000	
계		964,466	

라.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 및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23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총 2억원(정산결과 실 지원액: 1억 8,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그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동 사업은 예산집행상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첫째,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

나 실제로는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등)에 지원하거나 대학 부설기관 등 사실상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등)에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여 동 사업중 일부는 당초의 지원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임.

둘째, 「환경운동연합」의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사업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은 다른 부처(환경부 또는 행정자치부, 여성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시민단체의 사업성격을 지니므로 당초의 사업취지 및 선정기준⁹⁸⁾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셋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용 다큐 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한 사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성한 병역의무를 준수토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의 이해를 돋는 교육용 프로그램제작에

98) 인권옹호와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 인권관련 단체 등과 연대강화 등

국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병역기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2002년도 연구용역 사업중 하나인 “한국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같은 조사·토론·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지 못한 사업선정이라고 생각됨.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인권관련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되고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선정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사업추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의 자격,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설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보조금
1	사병의 인권 및 치우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12,650
2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현황 박서발간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7,950
3	군인의 전화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8,400
4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4,500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11,620
6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수첩 및 CD발간 보급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13,650
7	‘비브로더 보고서’발간 사업	함께하는시민행동	8,325
8	환자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건강연대	8,575
9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지역 인권단체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 워크샵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9,600
10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용 다큐제작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13,000
11	교회을 바꾸자. 청소년 인권을 찾자	(사)홍사단	5,530
12	여성 장애인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연대체 구성파 설천프로그램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0,100
13	종교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9,270
14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및 인권교실	익산YMCA	4,610
15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영/일어 번역 및 자막 편집 사업	두 래 방	11,613
16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 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DPI	9,066
1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무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활동가 양성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6,370
18	제1회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노근리사전대책위	6,737
19	2003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8,780
20	아시아정의평화연대 활동가 국제회의(JPW) 참석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
21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환경운동연합	10,000
22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9,030
23	희귀난치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사업	한국백혈병 환우회	7,744
합계			200,000

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업무에 관한 사항

(1) 인권침해조사·구제 등 핵심업무에의 집중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인권보호 및 향상이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구체적 업무분야는 크게 인권침해조사·구제,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 인권관련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한 개선권고(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등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취지 그리고 아직도 엄존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침해당사자에게는 참기 어렵고 억울한 문제로서의 개연성이 내재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구제야 말로 철실한 현안과제일 것임.

2003년 기준 진정사건을 살펴 보더라도 접수된 총 3,815건 중 인권침해 사건이 전체의 79.7%(3,041건)로서 차별행위 사건 9.4%(358건), 기타 사건 10.9%(416건)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인권침해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제도적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추진할 일은 조사역량의 강화,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점임. 한정된 예산과 인력하에서 광범위한 많은 일을 모두 잘 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인권침해문제 등 중요한 현안과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시성 내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많은 사업(예컨대 교육홍보 관련사업중 일부)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조사·구제를 비롯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업무평가시스템의 부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평가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임. 각종 사업을 엄정 평가하여 피드백하고 업무의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업무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음. 정부 각 부처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업무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여기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진단 또는 평가시스템을 마련·시행하여 평가 또는 진단의 결과 각종 사업의 실효성문제, 부서별 인력배치 및 사업별 예산편성의 비중 문제 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사건 처리상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408건으로 이 중 처리건수는 76.3%인 5,653건이고, 인용건수⁹⁹⁾는 171건으로 인용률은 2.3%에 불과함. 또한, 인용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8개월 이상 걸리는 등 진정사건의 지연처리의 문제가 있는 바 그 원인은 조사권한의 한계, 조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보여짐.

또 각하의 건은 77.7%로 이는 취하가 47%에 이르는 점 등에 기인하지만, 9.9%는 1년이 넘었다고 해서 각하한 경우임.

1년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진정의 성격상 억울한 사정의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때,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100)를 개정하거나 단서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직권조사의 건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한 것은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처리 방식에 기인하는 바, 인권취약분야에 능동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실효성있게 해결해 나갈 필요도 있음.

99) 고발·수사의뢰, 정체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 합의종결의 합계

100)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처리 현황
(2001. 11. 26 ~ 2003. 12. 31)

□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시 진 풍 결										조사 진행 (B)	처리율 (B)
		소개 수사의뢰	고발 수사의뢰	정체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종결	기각	이송	각하		
계	7,408	5,653	12	19	4	103	5	28	945	143	4,394	1,755	76.3
%	-	100.0	0.2	0.3	0.1	1.8	0.1	0.5	16.7	2.5	77.7	-	-
인권침해	5,874	4,502	12	19	4	60	5	23	853	142	3,384	1,372	76.6
차별행위	547	398	-	-	-	38	-	5	66	1	288	149	72.7
기 타	987	753	-	-	-	5	-	-	26	-	722	234	76.3

□ 진정사건 각하 사유별 내역

(단위 : 건)

사건구분	계	각 하 사 유						
		조사해상 아님	명백히 거짓, 이유없음	조사·원칙 않음, 진정취하	1년이상 경과후 진정	구제절차 진행·종결	법원 판결, 현재 결정에 반한	기 타
계	4,394	828	197	2,067	436	665	181	20
%	100.0	18.8	4.5	47.0	9.9	15.1	4.1	0.5
인권침해	3,384	284	167	1,882	345	535	159	12
차별행위	288	64	2	104	52	59	7	-
기 타	722	480	28	81	39	71	15	8

□ 직권조사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分	조사결정	조사진행	조사종결	비 고
계	4	1	3	
인권침해	2	-	2	2건에 대하여 고발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
차별행위	2	1	1	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조치

※ 참고자료

1. 2002년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제 목	원 면 내용 요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제회의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상당 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또는 참가자위의 결여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참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자위를 갖는지 여부, 국제회의 참가에 따르는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회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대로 참가함으로써 문제점 해소됨.
간단한 법률 검토에 대한 용역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담당관실, 인권연구팀 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인력(5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외부 용역화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이후 법률 검토를 위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음.

2. 2003년도 국외출장 현황

□ 기본사업비 : 53,226천 원

○ 외국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관 방문 현황 : 2회 6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국가인권기구	유럽인권재판소 및 스웨덴 음부즈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0.6-11 프랑스 스웨덴	인권정책국장, 차별조사국장, 최영란	
	유럽인권기구방문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2.11-21 덴마크(쾨펜) 오스트리아	유현, 유시춘, 김민홍 위원, 최영란	주요사업비와 함께 집행
	몽골인권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위원장 초청)	8.26-29 몽골	위원장 유시춘위원심상돈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파정 모니터링	11.17-22 제네바	박경서위원 교육협력국장	주요사업비와 함께 집행

□ 주요사업비 : 214,362천 원

○ 국제회의 참석 현황 : 21회 55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모니터링	1.11-18 제네바	박경서위원 장영아 정연길	
	인종차별 교육교체 기밀 워크숍	인권위 인권교육 참고	2.18-21, 파리	김철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1차 워크숍	아·태 지역 정부간 회의로서 정부대표, NGOs 참가	2.22-3.1, 이슬라마비드	교육협력국장 김선민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3.15-4.19(5주), 제네바	차별조사국장 등 7인	
	장애인협약 특별위원회(2차)	장애인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참가 및 의견개진	6.20-6.29, 뉴욕	유현위원, 최영란 김정학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인증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및 인권소위원회	인증차별협약 한국정부 이행보고서 심의 및 인권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87-14 제네바	박경서위원 김오섭위원 정연경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과정 모니터링	11.17-22 제네바	박경서위원 교육협력국장	
APP	APF 워크숍	장애인권리 및 장애인협약관련 워크숍	5.24-6.1, 뉴델리	한희원국장	
	인권과사법행정 워크숍	인권과 사법행정 국제회의 참가	9.8-12 발레이시아	차정환 서수정	
NGO	ESCR-Net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연대회의 참가	6.6-6.13, 치앙마이	유인덕, 이용근	
	비엔나+10아시아회의	비엔나 선언 10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12.13-17 태국	박경서위원	
기타	인권교육실무자 국제 회의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11.9-14 태국	김철홍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30차)	제30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 대회 참가	8.2-9. 베를린	심민석	
미국고용기회평등 위원회	조사관교육 참가	9.20-26 미국	이수연		
	북경주제 한국대사관·영사관	진정사건 현지 방문 조사	10.6-9 중국	정체웅 김원숙	
실무연수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9.24-10.2 노르웨이, 네덜란드	김대월 등 11명	행자부 예산	
	인권대사	인권위의 활동상황 홍보	9.14-20 영국,독일	박경서위원	
실포지엄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10.19-11.2 미국	박성남	행자부 예산	
	국가인권기구	일본 가구인대학교 초청실포지엄 참가	12.14-16 일본	정강자위원	
국가인권기구	유럽인권기구방문	12.11-21 덴마크노르웨이 이스라엘	유현,유시춘, 김만홍 위원, 최영란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국가인권기구	유럽아프리카 인권기구방문	12.20-28 스페인모로코	위원장 등 5명	

*실무연수를 제외한 NGO 및 기타 국외출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함.

○ 국가인권기구 교류 현황 : 6회 11명

교류기관	인원	소속	교류분야	일정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사무국	1	정책총괄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03.11.10~11.24
필리핀 인권위원회	2	총무과 인권교육	인사정책/인권교육	'03.11.10~11.24
파지 인권위원회	2	인권침해조사국, 인권교육	인권침해/인권교육	'03.11.19~12.3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2	차별조사국	차별조사 및 구제	'03.11.22~12.5
호주 인권위원회	2	법제개선담당관 인권침해조사국	법령·제도·정책 /인권침해조사	'03.11.29~12.13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2	조사기획담당관 국내협력과	인권침해조사 /국제협력	'03.12.8~12.23

- 공탁금 국고귀속을 즐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안내광고창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는
- 호적민원토탈시스템 사업 보류가 호주제 폐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 호적을 가족부로 편제하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지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비정규직인 인권상담센터 상담원의 정규직화 필요성
- 국외출장 인원이 전체직원의 약 39%에 달하고, 한국을 대표한 단일팀의 참여가 바람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따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교육용 다큐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 인권실태조사 용역과제중 유사한 과제가 많은 것 아닌가
- 탈북자 인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 이월과 불용이 과다한 것 아닌가

7. 부폐방지위원회소관

- 신고자 보상의 부진사유
- 신고자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승진,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필요
- 신고자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현행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가 미흡함. 이에 대한 대책은
- 부폐행위 신고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여비 등의 지급여부
- 용역사업에 대한 정밀한 사업계획이 필요
- 부폐방지교육·홍보 관련 예산의 불용사유는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폐방지 교육 활성화 방안
- 부폐방지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방안은
-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 내부고발의 활성화 방안
- 부폐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신고심사업무 활성화 방안은

둘째, 예비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5. 대법원소관

첫째, 고정자산매각대의 세입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등기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둘째, 일부 구 법원청사나 토지에 대한 관리부족, 토지매입예산의 일부법원에 대한 집중사용 및 법원청사와 등기소 신축사업에 있어서의 과다한 사고이월·불용에 대하여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시정'을 요구하며,

셋째, 헌법재판소에 관련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금제도는 관련기관과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함.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첫째,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의 부적정 및 용역사업의 불필요한 사고이월 발생과 유사과제 선정문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

7. 부폐방지위원회소관

첫째, 신고자보상금 집행의 활성화 및 지방순회부폐방지 활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연구용역의 발주시기 지연 및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함.

VII. 심사결과

1. 법무부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2. 법제처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3. 감사원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4. 헌법재판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5. 대법원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

VII. 시정요구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함.

1. 법무부소관

분류	구체적 사실	시정요구수준	조치요구기관
예산의 부당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일반직의 직급조정과 관련한 인건비를 예산에 미반영 · 일반회계 · 검찰청운영 인건비 (1321-101, 102, 205) ○ 법무부는 검찰청의 8·9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6·7급의 정원을 192명 증원하면서 추가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광범위한 이·전용을 초래함. 	시정	법무부
부당사항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준법추진운동사업비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 · 일반회계 · 범국민준법추진운동(1100-214) ○ 법무부는 범국민준법추진운동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판서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용역비로 전용하여 전액 이월함. 	주의	법무부
부당사항 (법적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임의사를 경력직공무원(의무직공무원)으로 임명 · 일반회계 · 교도소운영 인건비, 교도소운영기본사업비 기준성기본사업비, 교정기관인력관리(1521-111, 1522-152·154) ○ 의무직공무원 가운데 일부(22명)를 비전임의사로 충원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법무부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분류	구체적 사실	시정요구수준	조치요구기관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담센터 인력운영상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기관운영(1101~214) ○ 인권상담센터의 업무를 이직률이 높은 비정규직인 명예직 자원 활동가들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책임성, 조직의 안정성, 전문성 축적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제도개선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교육협력(1151) ○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	국가인권위원회
예·결산 제도의 운용상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사업의 사고이월 및 유사과제가 많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인권정책(1111)등 ○ 면밀한 사전 계획 부족과 발주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과제중 유사과제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용역과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시정	국가인권위원회

7. 부폐방지위원회 소관

분류	구체적 사실	시정요구수준	조치요구기관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보상제도운영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기관운영(1101) ○ 2001년도 1건에 74만원, 2003년도 2건에 7,374만원 그리고 2004년 7월 말 현재 4건에 2,169만원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신고자에 대한 포상, 인사상 우대 제도 신설, 신고자보호를 위한 배려 및 보상금지급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제도개선	부폐방지위원회
기타 부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순회부폐방지 활동 사업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기관운영(1101) ○ 지방순회부폐방지활동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단위 시민단체에 상설신고센터가 개설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의 존치여부 또는 세부사업 개편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제도개선	부폐방지위원회
예·결산 제도의 운용상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기본사업비등(1102) ○ 발주시기 지연(17건중 14건이 3/4분기 이후 발주)으로 용역 결과물의 하반기 집중과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부폐방지위원회

[세출결산보고서/일반회계/국가인권위원회]

과 목	세출액(원)	(수입액(수입금) -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용방지특례	세출액(원)	기초액	다음년도이월액	총액	사업자료
10000 보험회장	18,918,744,000	986,210,000	0	-288,000,000	0	19,904,954,000	17,068,214,390	1,159,032,000	1,677,707,610	
131회 법원행정	16,918,744,000	986,210,000	0	-288,000,000	0	19,904,954,000	17,068,214,390	1,159,032,000	1,677,707,610	
14000 학교운영	16,918,744,000	986,210,000	0	-288,000,000	0	19,904,954,000	17,068,214,390	1,159,032,000	1,677,707,610	
11000 재판·기관운영	8,224,071,000	0	0	208,000,000	0	8,224,071,000	7,415,236,830	0	808,634,170	
101회 기본급	3,679,938,000	0	0	163,000,000	0	3,842,938,000	3,839,744,460	0	4,193,540	
102회 수당	658,635,000	0	0	45,000,000	0	703,635,000	700,186,420	0	3,446,580	
103회 비정규직 보수	751,087,000	0	0	-208,000,000	0	543,087,000	77,924,370	0	465,162,630	
201회 판서운영비	929,527,000	0	0	0	0	929,527,000	899,120,180	0	30,406,820	
202회 어려움	3,634,000	0	0	0	0	3,634,000	1,702,000	0	1,932,000	
204회 업무추진비	599,500,000	0	0	0	0	599,500,000	495,640,940	0	103,859,060	
205회 평화봉사비	1,415,497,000	0	0	0	0	1,415,497,000	1,244,304,480	0	171,192,520	
206회 운영비	50,000,000	0	0	0	0	50,000,000	50,000,000	0	0	
301회 쟁상금	136,253,000	0	0	0	0	136,253,000	107,613,980	0	28,659,020	
302회 행정기본운영기금(1호)	5,237,120,000	0	0	80,000,000	0	5,237,120,000	5,062,667,200	80,000,000	94,452,800	
103회 비정규직 보수	40,034,000	0	0	0	0	40,034,000	40,019,530	0	14,470	
201회 판서운영비	3,995,494,000	0	0	-53,000,000	0	3,992,494,000	3,836,618,290	80,000,000	15,875,710	
202회 어려움	135,012,000	0	0	0	0	135,012,000	105,042,660	0	29,969,120	
204회 업무추진비	906,590,000	0	0	0	0	906,590,000	862,004,980	0	44,589,020	
404회 자살방지	105,000,000	0	0	-27,000,000	0	78,000,000	74,869,190	0	3,130,810	
407회 자산취득비	64,980,000	0	0	80,000,000	0	144,980,000	144,112,330	0	877,670	
411세장 인권활동	978,300,000	83,500,000	0	0	0	1,061,800,000	617,701,950	395,480,000	46,618,050	
201회 판서운영비	119,800,000	0	0	0	0	119,800,000	92,226,560	0	27,573,440	

과 목	세출예산액	(수입액(수입금) -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용방지특례	세출액(원)	기초액	다음년도이월액	총액	사업자료
204회 업무추진비	6,500,000	0	0	0	0	6,500,000	6,156,270	0	343,730	
206회 운영비	840,000,000	83,500,000	0	0	0	923,500,000	517,184,000	395,480,000	10,836,000	
302회 배포금	12,000,000	0	0	0	0	12,000,000	2,136,120	0	9,864,880	
112세장 민족정책기본법운영비	163,723,000	0	0	0	0	163,723,000	121,156,150	0	42,567,850	
201회 판서운영비	135,886,000	0	0	0	0	135,886,000	93,654,570	0	42,230,430	
205회 어려움	12,638,000	0	0	0	0	12,638,000	12,822,930	0	15,070	
204회 업무추진비	15,000,000	0	0	0	0	15,000,000	14,677,650	0	322,350	
131세장 청결운동	1,143,063,000	580,924,000	0	0	0	1,823,987,000	1,207,669,720	332,332,000	283,965,280	
201회 글로벌센터	654,652,000	0	0	0	0	554,652,000	293,148,510	0	251,503,490	
202회 어려움	1,514,000	0	0	0	0	1,514,000	1,443,900	0	70,100	
204회 업무추진비	3,600,000	0	0	0	0	3,600,000	3,573,160	0	26,820	
205회 운영비	259,843,000	680,924,000	0	0	0	940,767,000	798,965,100	126,469,000	75,332,900	
407회 자산취득비	323,454,000	0	0	0	0	323,454,000	110,539,030	205,863,000	7,051,970	
112세장 복지분야기본사업비	265,799,000	0	0	0	0	265,799,000	108,246,290	150,000,000	7,550,710	
201회 판서운영비	239,839,000	0	0	0	0	239,839,000	83,758,580	150,000,000	6,080,420	
202회 어려움	6,960,000	0	0	0	0	6,960,000	5,622,900	0	1,337,100	
204회 업무추진비	19,000,000	0	0	0	0	19,000,000	18,866,610	0	133,190	
132세장 민족정책조사기본사업비	226,747,000	0	0	0	0	226,747,000	124,169,060	40,000,000	62,577,840	
201회 판서운영비	92,361,000	0	0	0	0	92,361,000	30,320,200	40,000,000	22,040,800	
202회 어려움	71,186,000	0	0	0	0	71,186,000	71,182,230	0	3,770	
204회 업무추진비	14,000,000	0	0	0	0	14,000,000	13,821,050	0	176,870	
501회 보상금	30,000,000	0	0	0	0	30,000,000	8,000,000	0	22,000,000	
302회 예산금	19,200,000	0	0	0	0	19,200,000	845,600	0	18,354,400	
112세장 카페조사·주도사업비	200,140,000	0	0	0	0	200,140,000	67,071,070	35,500,000	97,568,930	

과 목	세출예산액	(수입대체/수입금)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상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용발이체액	세출예산원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잔액	사업개요
201은 퍼시픽알미	47,640,000	0	0	0	0	47,640,000	31,571,070	0	16,068,930	
204국 법무추진비	2,500,000	0	0	0	0	2,500,000	0	0	2,500,000	
205국 유통비	150,000,000	0	0	0	0	150,000,000	35,500,000	35,500,000	79,000,000	
1142세회 회계조작기준수입비	111,387,000	26,285,000	0	0	0	136,673,000	78,670,120	20,000,000	38,002,880	
201은 금서운영비	72,605,000	25,285,000	0	0	0	97,691,000	45,554,630	20,000,000	32,336,370	
202국 여비	25,582,000	0	0	0	0	25,582,000	24,828,160	0	753,840	
204국 법무추진비	9,000,000	0	0	0	0	9,000,000	8,217,350	0	782,670	
302국 세금급	4,200,000	0	0	0	0	4,200,000	70,000	0	4,130,000	
1151세회 교육필역	2,018,481,000	60,500,000	0	0	0	2,078,981,000	1,627,036,000	106,720,000	146,225,000	
201국 드라운팅비	993,602,000	0	0	0	0	993,602,000	867,354,770	12,000,000	94,247,230	
202국 여비	204,179,000	0	0	0	0	204,179,000	183,093,200	0	21,065,800	
204국 법무추진비	58,700,000	0	0	0	0	58,700,000	43,864,580	0	14,815,420	
205국 음악비	562,000,000	60,500,000	0	0	0	622,500,000	526,531,540	93,720,000	2,248,460	
204국 민간경찰여비	200,000,000	0	0	0	0	200,000,000	186,171,910	0	13,826,080	
1152세회 교육혁신기초사업비	168,757,000	16,000,000	0	0	0	184,757,000	172,106,110	0	12,650,880	
201국 금서운영비	101,103,000	16,000,000	0	0	0	117,103,000	105,640,920	0	11,462,080	
202국 여비	62,974,000	0	0	0	0	62,974,000	52,097,790	0	876,210	
204국 법무추진비	14,680,000	0	0	0	0	14,680,000	14,367,400	0	312,600	
1172세회 기관지지기본사업비	161,156,000	120,000,000	0	0	0	301,156,000	266,482,890	0	34,673,110	
201국 금서운영비	83,656,000	0	0	0	0	83,656,000	78,013,200	0	5,642,800	
204국 교통후진비	1,500,000	0	0	0	0	1,500,000	1,420,850	0	71,150	
207국 지급자득비	96,000,000	120,000,000	0	0	0	216,000,000	187,040,840	0	26,959,160	
국가정보원회 소관합계	16,918,744,000	936,230,000	0	230,000,000	0	19,904,954,000	17,368,214,390	1,158,032,000	1,577,707,510	

[세출결산보고서/일반회계/국가정보원]

과 목	세출예산액	(수입대체/수입금)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상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용발이체액	세출예산원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잔액	사업개요
130장 일본행정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131판 일반행정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1100항 국가정보원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1111세회 정보활동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203국 특수활동비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국가정보원 소관합계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목 차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일 반 회 계]

200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대현

I. 개 환	1
II. 일반회계	1
1. 세 입	1
2. 세 출	2
III. 검토의견	4
1. 인권상담 전문성 등 제고에 관한 사항	4
2.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5
3.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7
4.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인간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	12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에 관한 사항	16
※ 참고자료	21
1. 2002년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21
2. 2003년도 국외출장 현황	22

2004년 8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I. 개황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뿐임.

II. 일반회계

1. 세입

(단위 : 천원)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	57,999	47,999	10,000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800만원을 수납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불용 과태료 1,000만원은 미수납됨.

2. 세출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감액	이용 및 이체액				
18,918,744	986,210	-	-	-	19,904,954	17,068,214	1,159,032	1,677,708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189억 1,874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99억 49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7%인 170억 6,821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6억 7,771만원임.

(1) 지출액 170억 6,821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보면,

- o 기본사업비에 59억 3,35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34.8%를 차지하고 있고,
- o 주요사업비로 47억 1,15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27.6%를, 인건비로 64억 2,321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37.6%를 차지하고 있음.

(2) 전용액은 2억 8,8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중 기본급 및 수당부족(2억 800만원)과 관용차량 및 정보화장비부족(8,000만원)에 따른 것임.

(3) 이월액은 11억 5,903만원으로, 이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

역 등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 (4) 불용액은 16억 7,771만원으로, 결원된 직원의 충원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기인함.

III. 검토의견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 인권상담 전문성 등 제고에 관한 사항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예산 총 1억 6,909만원중 1억 6,85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인권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사례금)에 1억 5,000만원,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55만원을 지출하였음.

인권상담센터는 인권관련 경험자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에 대하여 전화 및 대면상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여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되었음.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 업무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조사·구제업무와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진정·상담·안내 접수건수가 19,416건에 이르는 점과 2002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46.9%의 높은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

무임.

그러나, 현재 인권상담센터에는 10명의 상담원이 일당 5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개월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이직률이 높은 명예직 자원활동가들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책임성,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축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음.

따라서 상담원의 정규직화 등 인력운영상의 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진 정	상 담	안 내
2002년도	13,217	2,790	2,869	7,558
2003년도	19,416 (46.9% 증)	3,815 (36.7% 증)	5,261 (83.4% 증)	10,340 (36.8% 증)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2003. 12. 31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은 186명(인권위원 포함, 파견직원 제외)으로 이 중 연인원 기준 약 39%인 72명(2회 이상 출장자

12인 포함)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해 2억 6,759만원을 지출하였음.

또한 연간 29차례에 걸친 국외 출장의 총출장일수(팀별 출장일수의 합계)는 286일에 달하고 있음(참고자료 2 : 2003년도 국외출장현황 참조).

이와 같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중 상당수가 해외출장을 가고, 더구나 2회 이상 출장자가 적지 않으며, 출장일수 또한 상당히 많게 집계된 것은 신설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가 계속 급증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므로 찾은 해외출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 및 ESCR-NET 등 각종 NGO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출장은 많은 외화를 들여가며 집행할 만큼 실익이 있거나 추가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외출장현황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출장횟수	출장인원	지출내역
29	72(중복출장 12인)	267,588

3.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사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개 과제의 인권상황실태조사, 15개 인권시민단체의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수립·행정공무원인권교육 책자집필·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정신과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으로 총 계약액은 19억 1,863만원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3개 과제에 계약액은 8억 2,916만원이며 이를 외부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절감과 아울러 현 인권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현장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를 위해 외부용역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둘째, 15개 시민단체의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경우 형식상 예산편성 과목은 연구용역개발비(예산과목 206-01)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모·심사·평가 등을 별도로 행하는 데 따르는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혀야 할 것임.

셋째,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의 계약 또는 협상계약으로 체결되는 현실에서 위원 또는 직원이 과거 근무했거나 관련되었던 시민단체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원칙인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넷째,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그 용역결과에 대하여 발표케 하여 그 과정과 용역결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용역사업 중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21건이 사고이월되었는 바 상당수 사업이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6건이 2003. 12. 16에, 2건은 2003. 12. 19에 사업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이월이 사업내실화 추구로 인한 기간부족에 기인한다고 보다는 계획성 없이 집행된 데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히 계획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파 제 명	연구기관	제 액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9,000
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24,517
3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 레 방	27,000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23,887
5	차별관련 법령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5,000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68,700
7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외국어대	20,000
8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9,000
9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23,000
10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 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9,000
11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실태조사	대구가톨릭대	29,000
12	비정규직노동자 건강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39,900
1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40,360
14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73,000
15	주거빈곤계층 사회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50,900
16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경원대학교	32,900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49,000
18	성별 동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8,000
19	장애 및 병역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체육복지대학	28,000
20	연령, 학벌, 학력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22,000
21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22,000
22	구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9,000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한국공법학회	86,000
계			829,164

2003년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현황

기타 용역사업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단체명	사업비
성적소수자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9,200
"	2003 여름 성적소수자 인권캠프 및 대학 순회 인권학교	동성애자인권연대	6,434
"	여성성적소수자 자금심 프로그램	끼리끼리	5,675
아동 및 청소년	아동인권향상과 가족기능회복	안산YMCA	10,750
"	아동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0,600
"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	한국청년연합회(KYC)	7,540
"	1318 너의 이름은?	울산YWCA	6,250
여성	상담활동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한국여성민우회	1,610
"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	기독교여성상담소	8,025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및 모성보호 사업	이주여성인권센터	11,530
"	아클라(ACLA)인권학교	아시아의 친구들(고양)	9,500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찾아주기	지구촌사랑나눔(성남)	13,875
장애인	장애인인권지지	장애인의문제연구소	12,697
"	장애인과 하나되는 어울마당	목포경실련	3,464
"	청소년과 장애인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야간학교	참여자체21(광주)	7,850
합계			125,000

(단위 : 천원)

구분	주주자	계약액	비고
인권교육 발전5개년계획	성공회대(한홍구)	59,860	
행정공무원인권교육 책자집필	이성훈 외 8인	18,806	
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서울대(문용린)	39,300	
정신파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중앙대	71,100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아이타스카스튜디오 외 3개사	312,400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시스월 외 1개사	463,000	
계		964,466	

4.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 및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23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총 2억원(정산결과 실 지원액: 1억 8,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그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동 사업은 예산집행상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첫째,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 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환경운

동연합 등)에 지원하거나 대학 부설기관 등 사실상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등)에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여 동 사업중 일부는 당초의 지원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임.

둘째, 「환경운동연합」의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사업 그리고 「한국 여성노동자협의회」의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은 다른 부처 (환경부 또는 행정자치부, 여성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시민단체의 사업성격을 지니므로 당초의 사업취지 및 선정기준¹⁾으로 볼 때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지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셋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용 다큐 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한 사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성한 병역의무를 준수토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의 이해를 돋는 교육용 프로그램제작에 국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병역기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 인권옹호와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 인권관련 단체 등과 연대강화 등

이는 2002년도 연구용역 사업중 하나인 “한국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같은 조사·토론·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지 못한 사업선정이라고 생각됨.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인권관련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되고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사업추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의 자격,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설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단 세 명	보조금
1	사병의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12,650
2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발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7,350
3	군인의 전화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8,400
4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4,500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11,620
6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수첩 및 CD발간 보급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13,650
7	'빅브로더 보고서'발간 사업	함께하는시민행동	8,325
8	환자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건강연대	8,575
9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지역 인권단체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 워크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9,600
10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제작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13,000
11	교회를 바꾸자 청소년 인권을 찾자	(사)홍사단	5,530
12	여성장애인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연대체 구성과 실천프로그램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0,100
13	중고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9,270
14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및 인권교실	의산YMCA	4,610
15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양이' 영/일어 번역 및 자막 편집 사업	두 래 방	11,613
16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 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DPI	9,066
1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무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활동가 양성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6,370
18	제1회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노근리사전대책위	6,797
19	2003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8,780
20	아시아평화연대 활동가 국제회의(JPW) 참석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
21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환경운동연합	10,000
22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진약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9,030
23	희귀난치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사업	한국백혈병 환우회	7,744
합계			200,000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인권침해조사·구제 등 핵심업무에의 집중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인권보호 및 향상이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구체적 업무분야는 크게 인권침해조사·구제,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 인권관련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등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취지 그리고 아직도 엄존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침해당사자에게는 참기 어렵고 억울한 문제로서의 개연성이 내재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구제야 말로 철저한 현안과제일 것임.

2003년 기준 진정사건을 살펴 보더라도 접수된 총 3,815건 중 인권침해 사건이 전체의 79.7%(3,041건)로서 차별행위 사건 9.4%(358건), 기타 사건 10.9%(416건)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인권침해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제도적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추진 할 일은 조사역량의 강화,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점임.

한정된 예산과 인력하에서 광범위한 많은 일을 모두 잘 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인권침해문제 등 중요한 현안과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시성 내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많은 사업(예컨대 교육홍보 관련사업중 일부)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조사·구제를 비롯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업무평가시스템의 부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평가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임. 각종 사업을 엄정 평가하여 피드백하고 업무의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업무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음.

정부 각 부처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업무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여기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진단 또는 평가시스템을 마련·시행하여 평가 또는 진단의 결과 각종 사업의 실효성문제, 부서별 인력배치 및 사업별 예산편성의 비중문제 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사건 처리상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408건으로 이 중 처리건수는 76.3%인 5,653건이고, 인용건수²⁾는 171건으로 인용률은 2.3%에 불과함. 또한, 인용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8개월 이상 걸리는 등 진정사건의 지연처리의 문제가 있는 바 그 원인은 조사권한의 한계, 조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보여짐.

또 각하의 건은 77.7%로 이는 취하가 47%에 이르는 점 등에 기인하지만, 9.9%는 1년이 넘었다고 해서 각하한 경우임.

1년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진정의 성격상 억울한 사정의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때,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³⁾를 개정하거나 단서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직권조사의 건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한 것은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처리 방식에 기인하는 바, 인권취약분야에 능동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실효성있게 해결해 나갈 필요도 있음.

2) 고발·수사의뢰, 경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 합의종결의 합계
3)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면,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처리 현황

(2001. 11. 26 ~ 2003. 12. 31)

□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사건 종 결										조사 진행	처리율 (B)
		소개	고발 수사(회)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중결	기각	이송	각하		
계	7,408	5,653	12	19	4	103	5	28	945	143	4,394	1,755	76.3
%	-	100.0	0.2	0.3	0.1	1.8	0.1	0.5	16.7	2.5	77.7	-	-
인권침해	5,874	4,502	12	19	4	60	5	23	853	142	3,384	1,372	76.6
차별행위	547	398	-	-	-	38	-	5	66	1	288	149	72.7
기 타	987	753	-	-	-	5	-	-	26	-	722	234	76.3

□ 직권조사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사결정	조사진행	조사종결	비 고
계	4	1	3	
인권침해	2	-	2	2건에 대하여 고발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
차별행위	2	1	1	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조치

□ 진정사건 각하 사유별 내역

(단위 : 건)

사건구분	계	각 하 사 유						
		조사대상 아님	명백히 거짓, 이유없음	조사 원치 않음, 진정취하	1년이상 경과후 진정	구체절차 진행·종결	법원 판결, 현재 결정에 반항	기 타
계	4,394	828	197	2,067	436	665	181	20
%	100.0	18.8	4.5	47.0	9.9	15.1	4.1	0.5
인권침해	3,384	284	167	1,882	345	535	159	12
차별행위	288	64	2	104	52	59	7	-
기 타	722	480	28	81	39	71	15	8

* 참고자료

1. 2002년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제 목	관련 내용 요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제회의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상 당초 계획되었던 상당 부분의 국제회의를 인권위사무처 출범전의 국제회의 또는 참가지위의 결여 등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NGO 회의 등에 참가하였음.	- 인권위가 독립된 참가지위를 갖는지 여부, 국제회의 참가에 따르는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회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당초 계획대로 참가함으로써 문제점 해소됨.
간단한 법률 검토에 대한 용역화 문제	-인권위 조직내에 법제개선팀 당관실, 인권연구담당관실 등 자체 법률검토조직이 존재하고, 전문계약직 등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인력(5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외부 용역화 하였음.	-외부용역을 별주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03년 이후 법령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를 하지 않음.

2. 2003년도 국외출장 현황

□ 기본사업비 : 53,226천 원

○ 외국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관 방문 현황 : 2회 6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국가인권기구	유럽인권재판소 및 스웨덴 옴부즈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0.6-11 프랑스 스웨덴	인권정책국장, 차별조사국장, 최영란	
	유럽인권기구방문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	12.11-21 덴마크(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유현, 유시준, 김민홍 위원, 최영란	주요사업비와 함께 집행
	몽골인권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체제 구축(위원장 초청)	8.26-29 몽골	위원장 유시준 위원장상운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과정 모니터링	11.17-22 제네바	박경서위원 교육협력국장	주요사업비와 함께 집행

□ 주요사업비 : 214,362천 원

○ 국제회의 참석 현황 : 21회 55명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모니터링	1.11-13 제네바	박경서위원 장영아 정연걸	
	인종차별 교육교체 개발 워크숍	인권의 인권교육 참고	2.18-21, 파리	김철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1차 워크숍	아·태지역 정부간의로서 정부대표, NGOs 참가	2.22-3.1, 아울러비드	교육협력국장 김선민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3.15-4.19(5주), 제네바	차별조사국장 등 7인	
	장애인협약특별위원회(2차)	장애인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참가 및 의견개진	6.20-6.29, 뉴욕	유현위원 최영란 김정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제63차) 및 인권소위원회	인종차별 협약 한국정부 이행보고서 심의 및 인권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8.7-14 제네바	박경서위원 김오섭위원 정연걸	
	사회권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과정 모니터링	11.17-22	박경서위원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지역	참가자	비고
APP	APP 워크숍	장애인 권리 및 장애인 협약관련 워크숍	5.24-6.1, 뉴델리	한희원국장	
	인권과 사법행정 워크숍	인권과 사법행정 국제회의 참가	9.8-12 말레이시아	차정환 서수정	
NGO	ESCR-Net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연대회의 참가	6.6-6.13 치양마이	유인덕 이용근	
	비엔나 10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비엔나 선언 10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12.13-17 태국	박경서위원	
	인권교육실무자 국제 회의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11.9-14 태국	김철홍	
기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69차)	제69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 대회 참가	8.2-9. 베를린	심민석	
	미국고용기회평등 위원회	조사관교육 참가	9.20-26 미국	이수연	
	북경주체 한국대사관·영사관	진정사건 현지 방문 조사	10.6-9 중국	정혜율 김원숙	
	실무연수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9.24-10.2 노르웨이, 네덜란드	김대철 등 11명	행자부 예산
	인권대사	인권위의 활동상황 홍보	9.14-20 영국, 독일	박경서위원	
	실무연수	국외실무연수(행자부주관)	10.19-11.2 미국	박성남	행자부 예산
	심포지엄	일본 가구인대학교 초청심포지엄 참가	12.14-16 일본	장강치위원	
	국가인권기구	유럽인권기구방문	12.11-21 덴마크·노르웨이 ·이스트포모아	유현, 유시준, 김만 희 위원, 최영란	
	국가인권기구	유럽아프리카 인권기구방문	12.20-28 스페인·모로코	위원장 등 5명	

* 실무연수를 제외한 NGO 및 기타 국외출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함.

○ 국가인권기구 교류 현황 : 6회 11명

교류 기관	인원	소속	교류 분야	일정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P) 사무국	1	정책총괄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03.11.10~11.24
필리핀 인권위원회	2	총무과 인권교육	인사정책/인권교육	'03.11.10~11.24
파지 인권위원회	2	인권침해조사국, 인권교육	인권침해/인권교육	'03.11.19~12.3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2	차별조사국	차별조사 및 구제	'03.11.22~12.5
호주 인권위원회	2	법제개선담당관 인권침해조사국	법령·제도·정책 /인권침해조사	'03.11.29~12.13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2	조사기획담당관 국내협력과	인권 침해조사 /국제협력	'03.12.8~12.23

200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200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II. 경사 결과

- 4 -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다. 감사원소관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04. 8.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라. 헌법재판소소관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04. 8.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마. 대법원소관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04. 8.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바.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04. 8.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사. 부패방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

- ◎ 제24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04. 8.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8. 26) 상정

- ◎ 제250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04. 9. 7)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04. 9. 7)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액	-
정수결정액	5,800만원
수 납 액	4,800만원
미 수 납 액	1,000만원

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82.75%이고, 미수납액비율은 17.25%임.

7. 부폐방지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액	-
정수결정액	1,372만9천 원
수 납 액	1,372만9천 원
미 수 납 액	-

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100%임.

세 출

예 산 액	189억1,874만4천 원
전년도이월액	9억8,621만원
예 산 현 액	199억 495만4천 원
지 출 액	170억6,821만4천 원
다음연도이월액	11억5,903만2천 원
불 용 액	16억7,7700만8천 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85.7%이고 다음연도이월액비율이 5.9이며 불용액비율은 8.4%에 해당됨.

세 출

예 산 액	159억2,201만5천 원
전년도이월액	12억3,145만원
예 산 현 액	171억5,346만5천 원
지 출 액	158억5,157만원
다음연도이월액	4,020만원
불 용 액	12억6,169만5천 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92.4%이고 다음연도이월액비율이 0.2%이며 불용액비율은 7.4%에 해당됨.

6.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 김 대현)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겸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가. 인권상담 전문성 등 제고에 관한 사항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예산 총 1억 6,909만원중 1억 6,85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인권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사례금)에 1억 5,000만원,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55만원을 지출하였음.

인권상담센터는 인권관련 경험자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에 대하여 전화 및 대면상담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여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되었음.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 업무인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등 조사·구제업무와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진정·상담·안

내 접수건수가 19,416건에 이르는 점과 2002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46.9%의 높은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임.

그러나, 현재 인권상담센터에는 10명의 상담원이 일당 5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개월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이직률이 높은 명예직 자원활동가들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책임성,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축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음.

따라서 상담원의 정규직화 등 인력운영상의 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진 정	상 담	안 내
2002년도	13,217	2,790	2,869	7,558
2003년도	19,416 (46.9% 증)	3,815 (36.7% 증)	5,261 (83.4% 증)	10,340 (36.8% 증)

* ()는 전년대비 증가율

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2003. 12. 31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은 186명(인권위원 포함, 파견직원 제외)으로 이 중 연인원 기준 약 39%인 72명(2회 이상 출장자 12인 포함)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해 2억 6,759만원을 지출하였음.

또한 연간 29차례에 걸친 국외 출장의 총출장일수(팀별 출장일수의 합계)는 286일에 달하고 있음(참고자료 2 : 2003년도 국외출장현황 참조). 이와 같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중 상당수가 해외출장을 가지고, 더구나 2회 이상 출장자가 적지 않으며, 출장일수 또한 상당히 많게 집계된 것은 신설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가 계속 급증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므로 찾은 해외출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 및 ESCR-NET 등 각종 NGO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출장은 많은 외화를 들여가며 집행할 만큼 실익이 있거나 추가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외출장현황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출장횟수	출장인원	지출내역
29	72(중복출장 12인)	267,588

다.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사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개 과제의 인권상황실태조사, 15개 인권시민단체의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 · 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수립 · 행정공무원인권교육 체자집필 · 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정신과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으로 총 계약액은 19억 1,863만원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3개 과제에 계약액은 8억 2,916만원이며 이를 외부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과 아울러 현 인권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현장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를 위해 외부용역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둘째, 15개 시민단체의 시민설천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경우 형식상 예산편성 과목은 연구용역개발비(예산과목 206-01)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모·심사·평가 등을 별도로 행하는 데 따르는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혀야 할 것임.

셋째,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의 계약 또는 협상계약으로 체결되는 현실에서 위원 또는 직원이 과거 근무했거나 관련되었던 시민단체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원칙인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넷째,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그 용역결과에 대하여 발표케 하여 그

과정과 용역결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용역사업중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21건이 사고이월 되었는 바 상당수 사업이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6건이 2003. 12. 16에, 2건은 2003. 12. 19에 사업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이월이 사업내실화 추구로 인한 기간부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계획성 없이 집행된 데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히 계획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평	연구기관	계약액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9,000
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이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24,517
3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 레 방	27,000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23,887
5	차별관련 법령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5,000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68,700
7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외국어대	20,000
8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9,000
9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23,000
10	군 사파과정 및 군 영창 인권 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9,000
11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실태조사	대구가톨릭대	29,000
12	비정규직노동자 건강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39,900
1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40,360
14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코리아레이아웃네트워크	73,000
15	주거빈곤계층 사회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50,900
16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경원대학교	32,900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49,000
18	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8,000
19	장애 및 병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28,000
20	연령, 학별, 학력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22,000
21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22,000
22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9,000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한국공법학회	86,000
계			829,164

2003년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단체명	사업비
성적소수자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9,200
"	2003 여름 성적소수자 인권캠프 및 대학 순회 인권학교	동성애자인권연대	6,434
"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프로그램	끼리끼리	5,675
아동 및 청소년	아동인권향상과 가족기능회복	안산YMCA	10,750
"	아동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0,600
"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	한국청년연합회(KYC)	7,540
"	1318! 너의 이름은?	울산YWCA	6,250
여성	상담활동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한국여성민우회	1,610
"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	기독교여성상담소	8,025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및 모성보호 사업	이주여성인권센터	11,530
"	아클라(AACLA)인권학교	아시아의 친구들(고양)	9,500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찾아주기	지구촌사랑나눔(성남)	13,875
장애인	장애인과 인권지지기	장애인우편의문제연구소	12,697
"	장애인과 하나되는 어울마당	목포경실련	3,464
"	청소년과 장애인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야간학교	첨억자치21(광주)	7,850
합계			125,000

기타 용역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수주자	계약액	비 고
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	성공회대(한홍구)	59,860	
행정공무원인권교육 책자집필	이성훈외 8인	18,806	
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서울대(문용린)	39,300	
정신과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실태조사	중앙대	71,100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아이티스카스튜디오 외 3개사	312,400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시스월 외 1개사	463,000	
계		964,466	

라.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 및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23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총 2억원(정산결과 실 지원액: 1억 8,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그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동 사업은 예산집행상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첫째,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

나 실제로는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등)에 지원하거나 대학 부설기관 등 사실상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등)에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여 동 사업중 일부는 당초의 지원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임.

둘째, 「환경운동연합」의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사업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은 다른 부처(환경부 또는 행정자치부, 여성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시민단체의 사업성격을 지니므로 당초의 사업취지 및 선정기준⁹⁸⁾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셋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용 다큐 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한 사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성한 병역의무를 준수토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의 이해를 돋는 교육용 프로그램제작에

98) 인권옹호와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 인권관련 단체 통과 연대강화 등